

제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1723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8. 18.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20가단408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6. 4. 접수 제49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가.항 4행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9. 6. 6.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고치고, 같은 항 5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선행소송에서 승소한 C의 채권자인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증여계약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C을 대리하여 202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년금제4636호로 공탁자 C, 피공탁자 원고로 하여 5,067,473원(= 4,400,000원 + 80,164원1) + 587,309원2))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선행소송에 기한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양순, 판사 이범휘

1) 133일(2019. 6. 6.부터 2019. 10. 16.까지) × 연 5%

2) 406일(2019. 10. 17.부터 2020. 11. 25.까지) × 연 12%